

##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차령단계 및 계수를 인하	- 1년미만 : 1.00 - 1년이상 2년미만 : 1.02 - 2년이상 3년미만 : 1.04 - 3년이상 4년미만 : 1.06 - 4년이상 5년미만 : 1.08 - 5년이상 6년미만 : 1.10 - 6년이상 7년미만 : 1.12 - 7년이상 8년미만 : 1.14 - 8년이상 : 1.16	- 다음과 같이 차령단계를 축소하고, 환경개선부담금 계수율을 인하함 · 4년미만 : 1.00 · 4년이상 6년미만 : 1.04 · 6년이상 8년미만 : 1.08 · 8년이상 : 1.12	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15조 (2003. 1. 1)	환경경제과 ☎2110-6677
2	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지역 추가 및 계수 조정	-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 지역에 도시계획법,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만 해당 - 지역계수 · 도시·준도시지역 : 1 또는 0 · 녹지지역 및 준농림지역 : 2 · 농림지역 : 3 · 자연환경보전지역 : 4 ※ 생태계보전협력금산정 = 훼손면적*지역계수 *250원/m <sup>2</sup>	-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및 바닷가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추가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개정시행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변경 · 관리지역(중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)중 생산관리지역은 2.5로, 보전관리지역은 3.5로 변경 ※ 계획관리지역은 중전 준도시지역 계수 (1 또는 0)와 동일	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4항 (2003. 1. 1)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8조제2항(2003. 1. 1)	자연정책과 ☎2110-6735
3	불법연료 등에 대한 규제 강화	- 불법연료 제조자만 규제	-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휘발유 등 불법연료 제조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, 추가로 공급·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	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(2003.7.1)	대기정책과 ☎2110-6780
4	자동차 공회전 제한	<신 설>	-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 및 과태료 신설할 수 있도록 함	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(2003.1.1)	교통공해과 ☎2110-6805
5	무공해·저공해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	- 천연가스버스 보급 권고 ※ 위반시 벌칙 없음	- 천연가스버스 등 무·저공해 자동차 교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 - 위반시 벌칙 적용 (200만원 이하 벌금)	대기환경보전법 제36의2, §57 (2003.7.1)	교통공해과 ☎2110-6805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6	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	- 승용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· NOX : 0.37g/km · HC : 0.19g/km	- 승용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 · NOX : 0.37 → 0.19g/km · HC : 0.19 → 0.056g/km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(2003.1.1)	교통공해과 ☎2110-6805
7	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	- 1톤당 110원	- 1톤당 120원	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(2003.1.1)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8	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	- 1톤당 110원	- 1톤당 120원	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(2003. 1. 1)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9	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이용 부담금부과율	- 1톤당 110원	- 1톤당 120원	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(2003. 1. 1)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10	낙동강수계관리기금주요사업시행	<신 설>	- 주민지원사업, 토지매수, 수질개선사업등 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 시행	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11	금강수계관리기금주요사업시행	<신 설>		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12	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시행	<신 설>	- 주민지원사업, 토지매수, 수질개선사업등 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 시행	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	유역제도과 ☎2110-6835
13	국·공유지 하천구역에서의 비료·농약 사용제한	<신 설>	- 낙동강, 금강, 영산강·섬진강수계의 국·공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료 및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야 함	낙동강수계법시행규칙제6조 및 부칙제1조, 금강수계법제6조및부칙제1조 영산강·섬진강법제8조및부칙제1조 (2003. 1. 1)	수질정책과 ☎2110-6830
14	총질소·총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	- 대상지역 : 팔당, 대청, 낙동강 일부 - 대상업소 : 1~4종 폐수 배출업소	-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, 대상업소를 전체 배출업소로 확대 · 대상지역 : 전국으로 확대 · 대상업소 : 1~5종 폐수배출업소	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(2003. 1. 1)	산업폐수과 ☎2110-6840
15	한강수계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	<신 설>	- 한강수계범위 지역중 "가·나" 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에 대해 "청정" 지역 기준 적용 * 서울(22개구), 인천 전역, 경기(9개시) 등 일부 지역과 '05.12 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	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, 환경부 고시 제1999-187호 (2003. 1. 1)	산업폐수과 ☎2110-6840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6	먹는물 수질기준강화시행	<신 설>	- 병원성미생물관리강화('02. 8. 1)에 따른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 ·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.03mg/l이하 ·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.1mg/l이하 ·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.09mg/l이하 ·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.004mg/l이하 · 할로아세틱에시드 0.1mg/l이하 ※ 시설용량이 1일 100,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	먹는물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규칙 (2003.1.1)	수도관리과 ☎2110-6880
17	다이옥신 배출 기준 적용	- 기존 소각시설들에 대하여 2002. 12. 31까지는 권고 기준 적용	- 기존시설들에 대하여 2003. 1. 1부터는 권고기준 대신 규제 기준 적용하여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(2003. 1. 1)	산업폐기물과 ☎2110-6935
18	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	- 1997년 7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0.5ng-TEQ/Nm <sup>3</sup>	-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0.1ng-TEQ/Nm <sup>3</sup> 적용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(2003. 7. 1)	산업폐기물과 ☎2110-6935
19	폐기물예치금 제도폐지	- 회수·재활용이 용이한 제품·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·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폐기물을 회수·처리한 경우 반환하여 주는 제도	- 폐기물예치금제도 폐지 (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통합)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8조(구법)	자원재활용과 ☎2110-6955
20	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	<신 설>	-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를 주고,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(2003. 1.1)	자원재활용과 ☎2110-6955
21	빈용기보증금 제도	- 주류공병, 청량음료공병에 빈용기 보증금을 각각 부과 · 주류병: 190~300ml→40원, 300~640ml→50원, 640~1,000ml→60원, 1,000~1,500ml→80원, 1,500ml이상→100원이상 · 청량음료병: 400ml미만→40원, 400ml~1,000ml→50원, 1,000ml이상→100원	- 주류공병과 청량음료공병에 빈용기 보증금을 일원화하여 부과 · 190ml미만→20원, 190ml 이상400ml미만→40원, 400ml이상1,000ml미만→50원, 1,000ml이상→100원 이상 300원이하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22조 (2003. 1. 1)	자원재활용과 ☎2110-6955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22	분리 배출표시 제도	-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표시하는 "재활용가능표시"제도와 합성수지용기와 금속캔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"재질분류표시제도"를 각각 운영	-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에 "재활용가능표시제도"와 "재질분류표시제도"를 통합하여 "분리배출표시제도"로 일원화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(2003.1.1)	자원재활용과 ☎2110-6955
23	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내용	- 백화점, 대형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 33㎡이상 판매업소(서적소매업과 약국 제외)에서 1회용 봉투·쇼핑백 무상제공 금지	- 서적도매업과 약국도 1회용 봉투·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로 포함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2003. 7월)	폐기물정책과 ☎2110-6915
24	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	- 1일 처리용량 1만㎡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·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㎡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분함량이 75% 이하인 경우 2003. 6. 30일까지는 직매립 가능	-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분함량 75% 이하인 경우도 2003. 7. 1일부터는 직매립 금지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(2000.7.22) 제2조(2003.7.1)	폐기물정책과 ☎2110-6915
		- 1일 폐수배출량 2천㎡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분함량이 75% 이하인 경우 2003. 6. 30일까지는 지정폐기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 가능	-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분함량 75% 이하인 경우도 2003. 7. 1일부터는 매립 금지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(2000.7.22) 제2조(2003.7.1)	폐기물정책과 ☎2110-6915
25	포장폐기물 발생 및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	- 위반행위 적발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이행 명령을 내리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- 위반행위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 강화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('02.2월, 전문개정) 제9조, 제10조 및 제41조(2003. 1. 1)	폐기물정책과 ☎2110-6915
26	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내용	-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컵·접시·용기·수저·포크·나이프, 나무젓가락·나무이쑤시개 사용금지. 단,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 허용	- 사용금지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비닐식탁보 추가  - 음식점 등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(예정)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2003. 7월)	폐기물정책과 ☎2110-6915